

현행 민간경비업 관련법상의 문제점과 입법론적 고찰

A Study on the Current Status and Development Plan of Private Security Industry

권상로
한세대학교 경찰행정학과

Kwon Sang-Ro
Hansei University

요약

현재의 우리 사회는 21세기를 맞이하여 범죄예방 및 진압 등에 새로운 치안수요가 국민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사회의 안전을 담당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경찰의 책임이나 시대가 복잡해지고 치안수요가 다양해지면서 그 모든 것을 경찰력만으로 해결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하겠다. 이에 따라 등장한 것이 민간경비이며, 오늘의 우리사회에서 더욱 요청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하다. 민간경비의 수요 증가로 인한 역할증대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민간경비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우리나라의 민간경비 수준은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와 비교해 볼 때 아직 미흡한 수준이며 취약점이 있어 이에 대한 법·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먼저 국가공인 민간경비자격증제도를 도입하여 이러한 전문 자격증을 갖춘 사람을 채용하는 것도 경비인력의 자질향상을 위한 하나의 해결책이 될 것이다. 또한 2001년 4월에 전문 개정된 경비업법에 의하면 경비업자는 경비업법에 의한 경비업 외의 영업을 하여서는 안 되도록 규정되었다. 이러한 경비업자의 겸업금지조항은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조항으로 겸업금지로 보호하려는 공익보다 기본권침해의 강도가 지나치게 크므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청원경찰법 제8조에 의하면 청원경찰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원주의 신청에 의하여 총기를 휴대할 수 있다. 그러나 청원경찰은 시설보호 및 방범적 차원의 업무수행을 하기 때문에 소지할 수 있는 무기 중에서 위험성이 높은 총기는 제외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Abstract

Endless criminal act has serious effect on safety of the nation and lives of the citizens and it is causing major disorder in ruling of the nation and the society. Also internet generalization in public put country's information foundation on the latest trend on the other hand, due to lack of security concept, cyber crime is on the rise such as hacking and viruses. But with various crime occurrence and increased desire for safety of citizens, there is limit to provide high quality public security service with just police force and equipments.

To solve the problems, advanced crime prevention system, not on the nation's level but on the private level was activated private security business some time ago. And now it has its firm place as a corresponding existence with crime prevention capability of police force.

Still private security industry of Korea has relatively many weak points when compared with advanced countries and it should be backed up with improvement of the law and the system.

I. 서론

196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도시화, 산업화 등의 사회변혁과 최근에 불어닥친 정보화사회로의 변화 열풍은 갖가지 달라진 모습을 우리에게 강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야기된 각종 사회병리현상들로 인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국민 개개인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안전의 욕구가 증대되고 있으며, 국가의 변화된 양질의 치안서비스가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우리 국가경찰은 이러한 사회적인 변혁에 대응한 치안서비스를 능동적으로 제공하기에는 많은 문제를 안

고 있고, 탄력적인 변화에 매우 둔감하다고 본다.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빠른 환경변화 속에서 발생하는 세세한 범죄현상들을 능동적으로 예방하고 발견하여 조치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러한 경찰력의 한계 등으로 민간경비산업은 급속히 성장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현대적 의미의 민간경비는 1960년대 초 미8군 부대의 경비를 담당하면서 시작되었다. 즉 당시 민간경비업체인 화영기업과 경업기업이 상공부장관이 발행하는 군납업자 등록필증을 가지고 군납에관한법률에 의해 용역경비를 실시

하였다. 그 후 부족한 경찰력에 대처할 수 있는 준경찰력 확보방안의 일환으로 경비업법이 제정된 1976년부터 민간경비는 본격적으로 자리 잡기 시작하였다[1]. 법이 제정될 당시 불과 10개밖에 되지 않았던 경비업체가 '86 아시안게임과 '88 서울올림픽 등 각종 국제행사를 치루면서 급성장하였으며 '93 대전엑스포박람회때 민간경비업체에서 행사 기간 동안 안전 및 경호경비 문제를 자체적으로 큰 사고 없이 끝마침으로써 민간경비업체의 능력을 재평가받는 기회가 되었다. 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2004년 2,322개 경비업체에 경비원이 총 105,697명 종사할 정도로 양적으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고, 질적인 면에서도 과거 사람위주의 단순경비에서 첨단장비 및 기술을 활용한 복합적인 형태로 발전하였다. 이처럼 민간경비가 성장추세에 있는 이유는 부익부 현상이 심해져 부유층은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스스로 지키려는 심리가 강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민간 경비의 시장이 커지면서 경비요원의 자질 부족과 범죄 연루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2004년에는 65개 업체, 2005년에는 6월까지 36개 업체가 경비업무 이외의 종사 등이 적발돼 경찰에 의해 허가가 취소됐다[2].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민간경비산업의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한 다음 우수한 민간경비인력을 배출하고 민간경비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입법론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이다.

II. 한국 민간경비업 시장의 특성

우리나라 민간경비업 시장의 특성을 살펴보면 첫째, 대부분의 경비업체가 인력 경비에 의존하고 있어 경비시장 개척이나 전문성 확보에 어려움이 크다. 반면에 미국, 일본 등의 선진국은 민간경비업의 성장 초기에는 인경비 중심이었으나, 급속한 과학 기술의 발달과 인력부족으로 인하여 기계경비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3]. 인력에 의존하여 경비업무를 행하는 인력경비만으로는 범죄문제 및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가 다원화된 현대사회에서 민간경비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 기계경비는 인력경비보다 부가가치나 성장가능성이 높은 분야이며 그 응용범위가 넓기 때문에 다양한 경비상품을 제공할 수 있어, 향후 우리나라도 기계경비시장은 소규모 점포 중심에서 대규모 공장, 국가시설 및 주택으로 확산될 것이며,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토털 서비스 체제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4].

둘째, 민간경비업체의 영세성이다. 경비업체의 인원별 현황을 살펴보면 총 1,515개의 업체 중 경비원 총 20명 미만의 업체가 781개소, 21-50명의 업체가 424개소, 51-100명의 업체가 177개소, 101-200명의 업체가 83개소, 200-300명의 업체

가 14개소 등이었다. 이러한 통계를 통해서 경비원 200명 이하의 업체가 전체의 97%를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 민간경비산업이 영세성을 띄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5]. 대부분의 민간경비업체들은 이러한 영세성으로 인하여 방범기기 개발과 대량생산과 같은 기계경비의 수요의 증가에 부응할 수 없다. 특히 특수경비업무를 도급받아 행하고자하는 경우에는 경비업법과 동법 시행령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인력, 자본금, 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상당수의 경비업체가 국가중요시설의 경비능력을 수행할 만큼의 충분한 규모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

셋째, 허가받은 전체 경비업체의 숫자보다는 전체 허가건수가 더 크다. 이는 아직 업종별로 전문화나 특화를 이루기보다는 한 경비업체가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하는 잡화점식 구조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는 경비업무와 전혀 어울리지 않은 위생관리업무, 부동산업, 컨설팅, 운송업, 여행알선업, 주차관리업 등을 사업 내용으로 다루고 있다[6].

넷째, 국내의 민간경비업체는 전체적으로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는 전반적인 여건이 조성되어 있지 못하여 몇몇 대기업이 전체경비시장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7]. 이러한 대기업을 제외한 영세한 기업들 간에는 치열한 생존경쟁이 벌어지고 있으며 자금과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은 도산의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 따라서 경비업무의 특성화 · 전문화를 추구하면서도 동시에 민간경비업체들이 전체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8].

다섯째, 민간경비 산업의 범위가 확대되었다. 민간경비 서비스는 주택, 상점, 기업체와 같은 민간부분에서부터 학교, 정부기관, 국영기업체와 같은 공공시설에까지 제공되고 있다. 1990년대 후반부터는 공공부문의 민영화 추세에 따라 공항, 항만, 군부대 등의 주요 국가 시설의 경비도 민간경비업체가 담당하게 되었다[9].

III. 현행 민간경비업 관련법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민간경비인력의 전문화 및 국가공인자격증제도 도입

민간경비산업은 고객과의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 이러한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경비원은 경비업무분야에 있어서 일정 수준이상의 전문적 지식과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그러나 규모면에서는 이제 공경비를 능가하고 있지만 경비업에 대한 인식부족과 열악한 처우로 인하여 경비인력의 사명감이 부족하고 이직율이 높아 민간경비는 주로 전문성이 없는 단기간경력자들에 의해서 수행되고 있다[10]. 그리고 아직도 민간경비원에 대한 교육과 훈련

은 낮은 수준이라고 평가받고 있다. 이러한 경비인력의 전문성의 결여와 자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공인하는 경비전문자격증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11]. 미국·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경비산업 등 안전관리산업에 있어서 전문자격증제도가 큰 호응을 받고 있다[12]. 국내에서는 경비원을 교육·감독하는 제도인 경비지도사제도가 1995년 12월 30일 경비업법의 개정으로 규정되어 1997년부터 경비지도사를 선발, 경비원을 지도·감독·교육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아직 민간경비원의 자격증제도는 없다. 우리나라의 경우 민간경비원은 경비업법 제1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누구나 경비원이 될 수 있으며, 신입교육과 직무교육만 받으면 된다. 민간경비 분야의 근무직원의 전문성확보와 이 분야의 발전 속도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는 선진국처럼 다양한 국가공인 민간경비자격증제도가 확대 실시되어야 한다.

2. 경비업자 겸업금지규정의 위헌성에 대한 논의

2001년 4월에 전문 개정된 경비업법에 의하면 경비업자는 경비업법에 의한 경비업 외의 영업을 하여서는 안 되도록 규정되었다. 이러한 입법의 목적은 경비원의 자질을 높이고 무자격자를 차단하여 불법적인 노사분규 개입을 막고 전문경비업체를 양성하는 것이다. 특히 무기사용을 허용한 특수경비업의 중요성과 공공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경비업자는 오직 경비업에만 전념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현실적으로 경비업자들은 주택관리 또는 위생관련업 등을 겸업하고 있어 문제가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2002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에서 본 규정에 대하여 전원일치로 위헌결정을 하였다. 사건의 개요를 보자면, 청구인들은 서울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경비업 허가를 받은 후 시설경비업, 기계경비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들로서, 그동안 경비업을 영위하면서 갖추게 된 사업설비, 경영능력 등을 바탕으로 안전·설비기기판매업, 도난차량회수사업 등 다른 영업을 함께 영위하고 있다. 청구인들은 위와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전기공사업등록, 정보통신공사업허가 등 관련 법령에 의한 인·허가 및 등록을 모두 적법·유효하게 취득 또는 경료하였으며, 위와 같은 사업 이외에도 각종 새로운 사업모델의 개발 및 진출을 계획하고 있다. 그런데 2001. 4. 7. 법률 제6467호로 전문 개정된 경비업법 제7조 제8항, 제19조 제1항 제3호, 부칙 제4조는 경비업자에게 경비업 이외의 영업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경비업 허가를 취소하도록 하면서, 다만 기존에 경비업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위 법 시행일부터 1년까지만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영업을 겸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청구인들은 2001. 8. 31. 위 법률조항들로 말미암아 직업의 자유, 재산권 및 평등권 등의 기본권을 침해당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경비업자의 겸업금지조항의 위헌성을 논하기에 앞서 먼저 동조항의 목적과 입법 경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즉 2001. 2. 23. 제218회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위원회에서 위 소위원회의 심사에 대한 보고와 동 수정안에 대한 토론을 하였다. 이때 소위원회 위원이기도 한 추미애 의원은, 기존의 기계경비원 등이 실제로 제조업 하도급업 등에 종사하면서 노사문제에 개입하고 있는데 이를 사후에 적발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위 소위원회 수정안 제7조 제8항의 특수경비업자 중 ‘특수’를 삭제하여 경비업자 모두에게 겸업금지가 적용되도록 하자고 제안하였고, 이에 대하여 다른 위원들도 이의가 없어 ‘특수’ 부분이 삭제되었다. 이와 같은 겸업금지조항을 신설한 이유로는 마찬가지로 “경비업자가 경비업무의 제조업, 근로자파견업 등 다른 업무를 병행할 경우 무자격자 유입, 총기유출의 위험성이 높으므로 이를 차단하기 위해 경비업자는 경비업 이외의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한다는 것이다[13].

생각건대 경비업자의 겸업금지조항은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조항으로 겸업금지로 보호하려는 공익보다 기본권침해의 강도가 지나치게 크므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며, 경비업의 수행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구체적인 업무를 특정하여 금지시키는 것이 아니라 경비업 이외의 모든 업무수행을 금지시키는 것은 지나치게 막연하고 포괄적인 표현이다. 또한 경비원의 자질을 높이고 무자격자를 차단한다는 입법목적은 경비원교육을 강화하거나 자격요건이나 보수 등 근무요건의 향상을 통하여 달성될 수 있는 것이다[14]. 따라서 경비업자의 겸업금지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은 타당하다고 본다.

3. 청원경찰의 총기소지의 효용성과 존속의 필요성

우리 정부는 1960년대부터 경제부흥을 위해서 대규모 국가 기간산업시설을 건설하게 되었다. 당시 남북간의 대치상황으로 인하여 산업시설에 불순분자들이 침투해서 파괴할 위험성이 있었기 때문에 총기를 소지한 훈련된 경비원이 경비업무를 실시할 필요성이 생겼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1962년 4월 3일 법령 제1049호로 청원경찰법을 제정하여 청원경찰제를 시행하게 되었다. 청원경찰은 경비목적에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 도내에서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한 경찰관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청원경찰법 제3조). 반면에 민간경비는 사인의 자격으로 시설주가 요구하는 경비시설물 내에서 경비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청원경찰제는 우리나라에서 민간경비가 활성화 되기 전에는 산업시설뿐만 아니라 국가 주요시설의 경비업무 수행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었지만, 1980년대 이후부터 민간경비업이 발전함으로써 그 역할과 기능이 중복되는 면이

있어 제도적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민간경비는 청원경찰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면서도 비용이 적게 들고 책임의 한계가 분명하며, 시설경비에 한정되지 않고 전문화된 기계경비 수행능력을 갖추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15].

청원경찰법 제8조에 의하면 청원경찰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원주의 신청에 의하여 총기를 휴대할 수 있다. 그러나 총기취급에 따른 전반적인 교육훈련 부족으로 총기사용은 극히 제한되고 있으며, 실제로도 은행과 같은 곳에서는 선량한 시민이 청원경찰의 총기사용으로 인명피해를 입을 수 있는 위험성이 크므로 총기사용은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 과거에는 국가 안보적 차원에서 청원경찰의 총기소지를 허용하였지만, 이제는 국가 안보적 기능은 군과 경찰에 의해서 주로 수행되고 청원경찰은 방범차원에서 경비업무를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청원경찰이 총기를 소지하는 것이 효용성이 있는 것인지 나아가 총기를 소지하는 청원경찰을 계속 존속시킬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쟁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총기소지문제로 더 이상 청원경찰과 민간경비의 이원적 운영을 계속적으로 유지시켜나가기 할 필요성이 없다는 주장이 있다. 즉 「총기훈련을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는 경찰조차도 적절치 못한 총기사용으로 국민들의 고귀한 생명을 희생시키고, 돌이킬 수 없는 신체상의 손상을 입혀 국민들로부터 계속적인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더구나 총기취급교육훈련이 경찰보다 훨씬 부족한 청원경찰의 경우 총기사용에 있어 경찰보다 더 많은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16]과 청원경찰이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총기를 사용하고자 하여도 청원주들이 총기사용에 따른 많은 문제점과 위험성이 뒤따른다고 판단하여 총기사용을 극히 제한하고 있는 현실적인 면」을 논거로 제시하고 있다[17]. 생각건대 최근에도 한 경찰관이 총기조작 중에 오발로 인해서 동료 경찰관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18]. 경찰은 청원경찰보다 더 총기훈련을 더 많이 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기사고가 종종 발생하고 있으며 적절치 못한 사용으로 국민들의 고귀한 생명이 희생되거나 신체상의 손상을 입을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다. 또한 경찰은 범죄수사와 범인체포시 총기를 소지한 범인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많다. 이에 비하여 청원경찰은 시설보호 및 방범적 차원의 업무수행을 하기 때문에 소지할 수 있는 무기 중에서 위험성이 높은 총기는 제외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우리나라와 사회적 여건이 비슷한 일본은 경비원이 총기뿐만 아니라 가스총까지도 소지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비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할 만하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청원경찰제도는 민간경비제도에 통합되어야 한다. 청원경찰은 인력경비에만 의존하고 있지만, 반면에 1980년대 중반 이후부터 민간경비는 기계경비시스템을 도입하여 종합적인 경

비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그 시스템은 첨단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IV. 결 어

우리 사회에서 끊임없이 지속되는 범죄행위는 국가의 안전과 시민의 삶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국가 통치질서와 사회질서에 대하여 큰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이 전 국민에게 보편화되면서 우리나라의 정보기반은 첨단화되고 있는 반면, 이에 대한 보안의식이 부족해 해킹·바이러스와 같은 사이버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각종 범죄의 발생과 이에 따른 시민들의 안전욕구 증대에 대해 경찰 인력과 장비만으로 양질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선진국에서는 오래전부터 국가차원이 아닌 민간차원의 범죄예방제도인 민간경비업이 활성화되어 지금은 경찰의 범죄예방 능력과 상응한 존재로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한국 민간경비산업은 선진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취약한 부분이 많으며, 법·제도적인 개선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 일환으로서 먼저 우수한 민간경비 인력의 확보 및 자질향상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우수인력을 선발 채용하고 이들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국가 공인 민간경비자격증제도를 도입하여 이러한 전문 자격증을 갖춘 사람을 채용하는 것도 경비인력의 자질향상을 위한 하나의 해결책이 될 것이다.

2001년 4월에 전문 개정된 경비업법에 의하면 경비업자는 경비업법에 의한 경비업 외의 영업을 하여서는 안 되도록 규정되었다. 이러한 경비업자의 겸업금지조항은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조항으로 겸업금지로 보호하려는 공익보다 기본권침해의 강도가 지나치게 크므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청원경찰법 제8조에 의하면 청원경찰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원주의 신청에 의하여 총기를 휴대할 수 있다. 그러나 청원경찰은 시설보호 및 방범적 차원의 업무수행을 하기 때문에 소지할 수 있는 무기 중에서 위험성이 높은 총기는 제외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인력경비에만 의존하고 있는 청원경찰은 기계경비시스템을 도입하여 첨단화되고 있는 민간경비에 통합되어야 한다.

■ 참 고 문 헌 ■

- [1] 김두현·김정현, 「민간경비론」, 백산출판사, 2002, p.122 이하.
- [2] <http://kr.news.yahoo.com /service/news/shellview.htmview>.

- htm?linkid=33&newssetid=470&articleid=2005121922243991140(2006년 2월 17일 방문)
- [3] 윤재풍, “범죄예방을 위한 민간경비제도 육성방안”, 「한국토지행정학회보」, 제6권, 1997, p.260
- [4] 이성진·김의영, “범죄예방을 위한 경찰과 민간경비의 상호 협력방안”, 「한국스포츠티서치」, 제16권 2호, 한국스포츠티서치, 2005, p.329
- [5] 이상원·이승철, “치안서비스의 공동생산론적 접근에 대한 연구”, 「용인대학교 논문집」, 제22집, 2004, p.287
- [6] 심재춘, “민간경호·경비업체의 마케팅 전략 분석”, 「한국스포츠티서치」, 제16권 5호, 한국스포츠티서치, 2005, p.614
- [7] 심재춘, 상계 논문, p.611
- [8] 김두현, “경호경비산업의 문제점과 발전방안”, 「한국체육대학교 논문집」, 제25집, 한국체육대학교, 2002, p.258
- [9] 이현희, “민간경비 성장에 대한 인과적 분석 : 경제, 범죄율, 경찰력”,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17호, 2004, p.328
- [10] 김두현, “경호경비산업의 문제점과 발전방안”, 「한국체육대학교 논문집」, 제25집, 한국체육대학교, 2002, p.255
- [11] 김태환·박대우, “신변보호사(경호사) 자격제도 도입방안”, 「한국안전학회지」, 제20권 제2호, 2005, p.146 이하.
- [12] 김세규, “사경비업자를 통한 위험방지”, 「공법연구」, 제30집 제3호, 한국공법학회, 2002, p.302
- [13] 현재 2002. 04. 25 선고, 2001헌마614, 현재판례집 제14권 1집, p.410이하.
- [14] 광대경, “한국 민간경비산업의 과제와 전망”,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12집, 한국공안행정학회, 2001, p.18 이하.
- [15] 윤재풍, 전계 논문, p.250 이하.
- [16] 김두현, 전계 논문, p.226 이하.
- [17] 김두현·김정현, 전계서, p.478 이하.
- [18] 2006년 2월 8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래지구대에서 오모 경사가 쏜 총탄이 이모 경사의 복부에 명중돼 이 경사가 혼수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http://news.joins.com/society> (2006년 3월 2일 방문)